



장기저축급여 청구서

※ 별지의 「장기저축급여 주요내용」, 「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주요내용」, 「퇴직생활급여 주요내용」 확인 후 작성하시고, □란에는 ✓ 표시하여 주십시오.
※ 탈퇴 후 신규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별도의 장기저축급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 적 사 항	성 명	홍길동	회원번호	A B C 0 1 2
	주민등록번호	6 2 0 1 0 1 - 1 X X X X X X	소속기관	0 0 초 등 학 교
	자택주소	㉠ (0 7 3 2 8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, The-K타워		
	자택전화번호	(0 2) 7 6 7 - 0 0 0 0	휴대전화번호	(0 1 0) - 2 3 4 5 - 0 0 0 0

청 구 사 항	청 구 사 유	☐ 정년퇴직 ☐ 명예퇴직 ☐ 일반퇴직 ☒ 탈퇴 ☐ 유족급여 ☐ 상병급여	퇴 직 일 자	년 월 일
	E - m a i l	koreanteachers @ ktcu.or.kr	최종부담금	2023년 12월 납입
	급여금수령	■ 금융기관: <u>대한은행</u> ■ 계좌번호: <u>123 - 12 - 123456</u>		
	지급내역서 수령지	☒ SMS ☐ E-mail ☐ 미발송 ※ 중복선택이 불가하며, 미선택시 미발송 처리됩니다.		

구 분	금 액	③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전환 (1구좌 : 1백만원)		④ 퇴직생활급여 전환 (1구좌 : 5백만원)	
		전환가능금액	신청금액	전환가능금액	신청금액
① 퇴직(가정)급여금	원	원	원	원	원
② 대 여 미 상 환 금	원	※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전환 신청란 미기재시 퇴직급여금이 전액 지급됩니다.			

- ① 장기저축급여 퇴직(가정)급여금은 년 월 부담금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.
② 대 여 미 상 환 금은 년 월 일 기준 금액입니다.
③ 분할급여금 전환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금액을 기재하시고,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④ 퇴직생활급여 전환을 희망하실 경우 신청금액을 기재하시고,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분할급여대여(전환) 주요 내용 확인

-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일 기준 퇴직급여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, 퇴직급여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.(미상환된 대여금은 퇴직일로 퇴직급여금에서 상계처리 되며, 상계처리 후 퇴직급여금 잔액은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)
- (별지-3,5) 기재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및 분할급여대여(전환)의 주요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설명된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☒ 확인 홍길동 서명[인]

본인은 (별지-1,2)에 기재된 급여청구시 유의사항 및 장기저축급여 청구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귀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저축급여금을 청구합니다.

2024 년 1 월 8 일
청 구 인 홍길동 서명[인]

분 회 장 00초등학교장 (직인) (소속기관장)

※ 유족급여 청구시 청구인(대표자) 인감 날인
※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 첨부시 분회장 직인 생략

0
학
0
인
교
초

급여청구 유의사항

구 분	내 용
급여청구 유의사항	■ 탈퇴 또는 퇴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장기저축급여와 목돈급여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. ■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월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퇴직일 이후에는 퇴직급여금에 대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퇴직일 전에 급여청구를 하여 주십시오. • 내방접수 및 우편발송 : 본부 및 해당 시·도지부(별지 주소 참고) • 인터넷청구 : 홈페이지(www.ktcu.or.kr) ▶ 마이페이지 ▶ 저축 ▶ 저축 청구(해지) ▶ 장기저축급여 ※ 인터넷 청구시 본인명의 휴대전화 및 공동인증서인증, 퇴직(예정)증명서 파일 첨부 ■ 대여상환중인 회원은 대여 미상환액을 장기저축급여와 전액 상계처리 후 잔액은 지급하며, 초과된 대여금은 일시상환을 하여야 합니다. (퇴직일 이후에는 연체이율 적용) - 장기저축급여에서 대여 미상환금 상계 부족 시 목돈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목돈급여에서 상계처리 합니다. ■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 동시 자동전환 가능 (단, 인터넷 청구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) ■ 탈퇴 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할 경우에는 신규가입절차에 따라 본회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. ■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됩니다. ■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 시는 특별회원으로 공제회 회원자격이 유지되어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호텔 등 숙박시설 및 의료기관, 제휴서비스 할인 이용, 법률·세무·노무상담 소 무료 이용, 문화·스포츠 및 은빛동행 행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
장기저축급여 주요내용

구 분		내 용													
회원자격 취득		▶ 최초 부담금이 납입된 날부터 회원자격 취득													
부담금 납입		▶ 부담금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함(휴직자는 자동이체 또는 개별납입 가능)													
급여금 계 산	퇴 직 급여금	▶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(원금)에 퇴직급여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며, 급여율 조정, 납입사항 변동 및 관련 소득세법 개정 등에 따라 퇴직급여금은 변동될 수 있음 ▶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(이자)이 계상되지 않으며,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4조의2(소멸시효)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급여금이 소멸됨 ▶ 휴직 미납 기간에도 휴직 전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율에 따라 부가금(이자)이 계산됨													
	탈 퇴 급여금	▶ 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탈퇴급여금으로 지급함. 다만,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회원이 탈퇴 청구 시 퇴직급여금을 전액 지급함. <table><tr><td>가입기간</td><td>탈퇴급여금</td><td>가입기간</td><td>탈퇴급여금</td></tr><tr><td>5년 미만</td><td>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40%</td><td>10년 이상 ~ 15년 미만</td><td>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60%</td></tr><tr><td>5년 이상~10년 미만</td><td>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50%</td><td>15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<td>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70%</td></tr></table>		가입기간	탈퇴급여금	가입기간	탈퇴급여금	5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40%	10년 이상 ~ 15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60%	5년 이상~10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50%	15년 이상 ~ 20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70%
	가입기간	탈퇴급여금	가입기간	탈퇴급여금											
	5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40%	10년 이상 ~ 15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60%											
5년 이상~10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50%	15년 이상 ~ 20년 미만	부담원금 100% + 부가금의 70%												
대 여 금 상계처리	▶ 대여금 채무 불이행시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청구와 관계없이 회원의 퇴직급여금과 대여원리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음														
세 율	비과세	▶ 1998.12.31 이전 가입자													
	저 율 과 세	▶ 1999.1.1 이후 가입자 ※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, 관련세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													
급여금 보장		▶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(제13조)에 따라 급여금의 안정성 보장													
주요사항공지		▶ 제도 가입신청 및 급여청구 관련 진행 상황, 급여율 변경 등 제도관련 중요 내용은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전송됨													

공제제도(장기저축급여 세부내용 포함) 및 복지제도의 궁금한 사항이나,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처 변경시에는 회원콜센터(1577-3400) 또는 홈페이지(www.ktcu.or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장기저축급여 청구 구비서류

○ 구비서류 각 1부

공통서류	①장기저축급여 청구서 ②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 1) 사본 - 2020.12.21.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(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) 추가 제출
탈퇴 청구	공통서류 ①~② ③장기저축급여 청구서 분회장(소속기관장) 직인 누락 시 재직증명서(1주일 이내 발급) 첨부
퇴직 청구	공통서류 ①~② ③퇴직(예정)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, (퇴직일 후 발급된) 경력(재직) 증명서 (사본가능)
유족급여 청구	①장기저축급여 청구서(대표자 인감 날인) ②퇴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, (퇴직일 후 발급된) 경력(재직) 증명서 (사본가능) ③회원의 기본증명서(사망일자 기재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-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추가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(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) *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-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④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(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) -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 성명, 인감날인 ⑤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 및 본인확인서(필수) [순직]⑥순직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-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발행 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
유족급여 청구 (급여금 보다 대여가 많은 경우)	①장기저축급여 청구서(대표자 서명) - 청구인의 자택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계좌번호 작성(필수) ②청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③퇴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, (퇴직일 이후 발급된)경력(재직)증명서 (사본 가능) ④회원의 기본증명서(사망일자 기재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 -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있어야 함 ⑤수급권자 청구용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 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
상병급여 청구	공통서류 ①~② ③퇴직(예정)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(상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임을 기재) ④진단서(질병코드, 병명기재, 건강보험 지정의료기관 발행) ⑤상병확인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필수)) (분회장 직인, 본회 소정양식) - 진단서상 질병으로 인한 퇴직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[공상]⑥장해폐질등급 결정서, 장해(연금)승인결정서 -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※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함

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								
제도안내	장기저축 퇴직급여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회원의 희망에 따라 장기저축 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노후생활 보장제도								
신청자격	▶ 일반회원으로서는 정년·명예·임기만료·상병·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하는 교직원 -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분할급여금 신청자격 상실됨 - 퇴직 청구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탈퇴회원은 신청이 불가함								
급여율	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음								
세 율	▶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 적용								
신청금액	▶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 -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일 기준 퇴직급여금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(미상환된 대여금은 퇴직일로 퇴직급여금에서 상계처리되며, 상계처리 후 퇴직급여금 잔액은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) - 퇴직급여금 수령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불가 - 분할급여금 신청서 신청금액에 전액으로 작성 시 100만원 이상 금액은 분할급여금으로 신청되며, 100만원 미만 금액은 퇴직급여금으로 지급됨(세후 기준) - 퇴직 시 퇴직급여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-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로 동시 전환 신청 가능 (단, 인터넷청구 시 분할급여금만 전환 가능)								
지급종류 및 지급방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">지 급 종 류</td><td>즉시지급형 :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</td></tr> <tr> <td>지 급 기 간</td><td>5년 / 10년 / 15년 / 20년 / 25년 / 30년</td></tr> <tr> <td>지 급 주 기</td><td>매월 / 매년</td></tr> <tr> <td>지 급 일</td><td>5일 / 15일 / 25일</td></tr> </table> ▶ 급여금은 가입일로부터 매월(1개월 경과) 또는 매년(1년 경과)지급되며, 5일, 15일, 25일 중 본인이 선택한 지급일에 지급됨(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)	지 급 종 류	즉시지급형 :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	지 급 기 간	5년 / 10년 / 15년 / 20년 / 25년 / 30년	지 급 주 기	매월 / 매년	지 급 일	5일 / 15일 / 25일
지 급 종 류	즉시지급형 : 원리금 균등 분할지급								
지 급 기 간	5년 / 10년 / 15년 / 20년 / 25년 / 30년								
지 급 주 기	매월 / 매년								
지 급 일	5일 / 15일 / 25일								
급여금 보장	▶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(제13조)에 따라 급여금의 안정성 보장								
신청방법	▶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가능 금액이 기재된 급여청구서와 장기저축급여 분할 급여금 신청서 각 1부를 본부 또는 지부 내방 및 우편발송								
계약변경	▶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까지 계약조건(지급기간, 지급주기, 지급일) 변경 가능 - 1회차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 불가								
중도해약	▶ 전체해약만(부분해약 불가) 가능하며, 해약수수료는 없음 ▶ 해약한 이후 분할급여금 재가입 신청 불가								
수급권자 지 정	▶ 회원 사망시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해약처리 후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급여금 지급 ▶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에 한하여 수급권자(1인)를 지정할 경우 사망시 수급권자에게 지급 - 내 방 시 :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등본(회원과의 관계증명) - 우편발송시 : 지정·변경신청서(본회서식, 인감날인), 회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회원과의 관계증명) 각 1부								
기 타	▶ 급여율 변경 및 급여금 지급 안내 등 제도관련 중요 내용은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전송됨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됨								

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되시면 회원콜센터(1577-3400) 또는 홈페이지(www.ktcu.or.kr)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퇴직생활급여 주요내용

구 분	내 용												
가입자격	▶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정년·명예·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▶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▶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▶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												
가입종류	▶ 부 가 금 형 : 부가금(이자) 분할 지급(매월 또는 매년 중 선택) ▶ 확정연금형 : 가입기간 원리금 분할 지급(5년, 10년, 15년, 20년 중 선택) ▶ 적 립 형 : 가입기간(3년, 5년) 만기시 원리금 일시 지급 ※ 가입 완료 후에는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 변경 불가												
가입금액	▶ 부가금형 + 확정연금형 : 1구좌(500만원) ~ 100구좌(5억원) ※ 단,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(3억원) 한도 ▶ 적 립 형 : 월 5만원~277만원(가입기간 3년) / 월 5만원~166만원(가입기간 5년) ※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5,000만원까지 가입 가능												
부 담 금 납입방법	▶ 가입신청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이 무효 처리됨 ▶ 가상계좌 입금 : 가입접수 완료 후 회원 휴대전화로 가상계좌번호(농협, 신한, 국민, 하나 중 택 1) 문자 전송 ⇨ 입금 ▶ CMS 입금 : 가입접수 완료 후 회원 휴대전화로 입금은행 계좌번호 및 코드 문자 전송 ⇨ 입금 ▶ 적립형은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통장에서 자동이체 됨(매월 7일, 17일, 25일 중 선택)												
급 여 율	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급여율이 조정될 수 있음(변동금리)												
중도해약시 부가금 차등 지급	▶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<table><tr><th>납입 경과기간</th><th>해약급여금</th><th>납입 경과기간</th><th>해약급여금</th></tr><tr><td>90일 미만</td><td>부가금의 50%</td><td>90일 이상 ~ 180일 미만</td><td>부가금의 80%</td></tr><tr><td>180일 이상</td><td>부가금의 90%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/table>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90일 미만	부가금의 50%	90일 이상 ~ 180일 미만	부가금의 80%	180일 이상	부가금의 90%	-	-
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납입 경과기간	해약급여금										
90일 미만	부가금의 50%	90일 이상 ~ 180일 미만	부가금의 80%										
180일 이상	부가금의 90%	-	-										
수급권자 지 정	▶ 회원 사망시에는 퇴직생활급여금 해약처리 후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급여금 지급 ▶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,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(1인)를 지정할 경우 사망시 수급권자에게 지급 - 내 방 시 : 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회원과의 관계증명) - 우편발송시 : 지정·변경신청서(본회서식, 인감날인), 회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회원과의 관계증명) 각 1부												
급여금 보장	▶ 특별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(제13조)에 의거 급여금의 안정성 보장												
비과세종합저축 신청 자격	▶ 자격요건 - 만 65세 이상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)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: 보훈번호 앞자리 21, 23, 35, 51, 59, 61, 65, 71, 81, 97만 해당)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(독립유공자증, 독립유공자유족증, 독립유공자확인원,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증,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)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(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,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) - 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(5·18 민주유공자증, 5·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) ▶ 소득요건 -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												
주요사항 공지	▶ 제도 가입신청 및 급여청구관련 진행 상황, 급여율 변경 등 제도관련 중요 내용은 휴대전화의 문자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문자 전송됨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됨												

퇴직생활급여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,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, E-mail 등 연락처가 변경되시면, 홈페이지(www.ktcu.or.kr) 또는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분할급여대여(전환) 주요내용

■ 분할급여대여(전환)는 퇴직시점 대여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%이내인 회원이 분할급여금 신청시, 분할급여금 가입액 증액을 위해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자격

- ▶ 분할급여금에 가입 예정인 회원 중 퇴직시점 대여 잔액이 세후 퇴직급여금의 60% 이내인 회원
- ▶ 퇴직일 이후에 부분상환으로 대여 잔액이 퇴직급여금의 60% 이내로 하락하게 되더라도 분할급여대여(전환)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
2. 신청방법

- ▶ 분할급여금 신청 시 제출하는 장기저축급여 청구서와 분할급여금 신청서와 함께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서류를 본부 또는 해당 시·도지부로 송부 (퇴직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)
- ▶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 서류
 - 분할급여대여(전환) 신청서 1부
 -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지) 각 1부
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) 사본(앞면) 1부
 -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(※분할급여대여 신청 시 반드시 자동이체 신청 필수)

3. 신청금액

- ▶ 분할급여금 신청 시 분할급여대여(전환)를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은 {분할급여금 신청 금액 - (퇴직가정급여금 - 대여 잔액)}(1만원 단위 절상)을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▶ 분할급여대여(전환) 지급 이후에는 분할급여금의 잔여 분할부담원금 60% 이내에서 재대여를 통해 대여금액, 상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4.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

- ▶ 최저 1년에서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(※ 분할급여대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3년)
- ▶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상환기준일은 매월 납부하는 대여원리금 균등상환액을 적용하는 기간의 기준일 및 1회차 납부월, 부분상환 익월, 대여이율 변경월의 이자를 일할계산하는 기준일입니다.
 - ※ 7, 17, 25일 중 신청하는 부담금 자동이체일은 상환기준일과는 관계가 없는 원리금 상환일입니다.
- ▶ 대여상환액은 본인통장에서 자동이체되며, 대여 신청 시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 - 홈페이지에서 신청(공동인증서 필요) 또는 회원콜센터(1577-3400) 전화 및 녹취를 통한 신청
 - 우편 신청 :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(FAX 신청 불가)
- ▶ 대여기간 만료 전에 부분 및 일시상환이 가능하며,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.
- ▶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.

5. 대여 이율

- ▶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대여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(변동금리)

6. 대여 연체

- ▶ 분할급여대여 월상환액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, 연체가 6회 동안 지속될 경우 즉시 변제 의무가 발생하여 분할급여금으로 미상환 대여원리금 전액을 직권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. (상계된 후 잔여 분할급여금은 별도의 청구 없이 분할급여금 지급 계좌로 지급됩니다.)
- ▶ 주소, 전화번호 등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 귀회에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,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귀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7. 기타

- ▶ 주소, 연락처 등 인적사항(개인정보)이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자동 변경됩니다.

분할급여대여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회원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부 및 지부주소 안내

구 분	주 소	우편번호
본 부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(여의도동 35-3) The-K타워 25층 공제사업부	07328
서울지부	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(인의동 112-1) 하나손해보험빌딩 11층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지부	03137
강원지부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 2370 (온의동 513)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5층	24436
인천지부	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(간석동 172-1)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2층	21544
경기북부지부	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16 (의정부동 141-3) 한화생명빌딩 2층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북부지부	11697
경기남부지부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(인계동 1124) 한국교직원공제회 경기회관 5층	16488
대전지부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(탄방동 700)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3층	35260
충북지부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(가경동 1416-2) 메가폴리스 4층 한국교직원공제회 충북지부	28396
충남지부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(탄방동 700)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3층	35260
세종지부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(탄방동 700)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3층	35260
광주지부	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(농성동 417-40)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층	61932
전북지부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(서신동 769-1)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 4층	54949
전남지부	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(농성동 417-40)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층	61932
제주지부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(이도1동 1690-8) 대한항공빌딩 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주지부	63198
대구지부	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(범어동 177-4)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4층	42028
경북지부	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(범어동 177-4)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회관 4층	42028
부산지부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(초량동 1205-1) 한국교직원공제회 부산회관 2층	48821
울산지부	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7 (달동 1358-8) 유안타증권빌딩 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울산지부	44703
경남지부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(중앙동 93-2) 한국교직원공제회 경남회관 3층	51515